

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행복 대한민국



방송통신위원회

수신자 (주)진보넷
(경유)

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
취급 거부 명령

1. 관 련

- 가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
- 나. 불법정보심의팀-977(2011.07.21., 시정요구 이행결과 통보)
- 다. 개인정보보호윤리과-1640(2011.08.02.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의견조회)
- 라. PO-20110812-01(2011.08.12., 개인정보보호윤리과-1640(2011.08.02) 관련 의견제출의 건)

2. 귀 단체에서 제공하는 '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' 사이트(<http://hcy.jinbo.net>)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귀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.

3. 귀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검토한 바,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.

- o 시정요구 및 본 명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 제1항 제8호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며, 시정요구의 내용인 '이용해지'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시정요구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음

4. 따라서, 귀 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 제3항에 따른 취급 거부에 해당하는, 해당 사이트의 이용해지(사이트 폐쇄)를 명하니 2011.8.26까지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5. 아울러,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